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3
----------	-----

2024.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우종혁 의원 대표발의(8명 공동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위원회 대안으로 함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우종혁 의원)

본 일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조항 구체화 (안 제5조~제8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본 조례는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노출, 사회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한 지원부족 실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강남구 차원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현행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지원할 사업의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지원사항으로 명시하였음.
- 우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한 바, 상담사업(안 제5조 심리, 진로, 가족 상담 등), 학업지원(안 제6조 검정고시, 재취학, 재입학, 자격취득, 진로탐색 지원 등),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안 제7조) 및 자립지원(안 제8조 생활, 문화, 의료, 정서, 경제, 법률 지원 등)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지원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참고로 집행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그에 관한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음.

<표>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사업 개요

① 사업위치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144(시립수서청소년센터 2층)

② 인 력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종사자 3명

사 업 명	내 용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원	개인상담, 전화 및 매체상담, 학업중단숙려제, 집단상담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
교육지원	스마트교실, 멘토단 운영, 상급학교진학 및 대학입시지원	특성화사업	학교 밖 청소년 캠프, 자기계발 문화예술 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 경제교육, 자립지원 및 취약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아웃리치, 지역협의체 연계 홍보

<참고자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8조(상담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질 의 : 현행 조례 제5조의 지원사업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학업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으로 규

정을 풀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행 조례로 다 지원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 답 변 : 현행 조례 제5조 지원사업에서 총 5개 호로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 사업의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함. 현행 조례 발의가 2021년 4월임. 이후 상위법이 많이 개정되었고,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상위법령을 체계를 구체화하였기에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지원을 하고자 조문을 개정함

○ 질 의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 과정에서 예산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 답 변 : 법문서 체계상 사실 강남구청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묵시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반되고 예산 범위 내 지원이라 묵시적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함

○ 질 의 : 조례 제5조제6항 위탁법인이 위탁할 수 있는 제한 규정(동일분야 시설 중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 5개소 이내)이 25개에 하나도 없고 강남구 조례가 유일함.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은가

○ 답 변 : 현실적인 애로가 있음. 강남구에만 있는 제한 규정으로 행정 추진에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함

7. 토론 요지

○ 지원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구청장의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8. 심사 결과 : “위원회 대안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관련의안번호

제363호

발의일자 : 2024. 4. 25.

제안자 : 복지도시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지원사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구청장의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상정·안건 처리함.

2. 대안의 주요내용

- 예산 범위 내 사업 추진과 구청장의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상담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학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 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사업)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u> 2. <u>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u> 3. <u>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u> 4. <u>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 지원</u> 5. <u>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u> <p><u><신 설></u></p>	<p>제5조(상담지원) <u>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제6조(학업지원) <u>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u> 2. <u>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u>

<신 설>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구
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
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학
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
지원, 정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 법률교

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예산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 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 제16조 (생 략)

제10조 ~ 제20조 (현행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상담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학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자립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자원)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각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 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3.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관내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5.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 관계 공무원이 매년 1회 이상 서류 점검 및 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가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